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 - 6 호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을 제정고시합니다.

1996년 2월 5일

통상산업부장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상의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취급기관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용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융자기관 및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과제”라 함은 본 자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개발중

인 과제와 신청과제가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제 4 조 [시행계획의 공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년도별 지원규모, 용자대상 및 조건, 취급기관 및 은행, 신청 및 선정방법,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를 통합 또는 공동연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사업의 중복성 확인] ①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개요 및 기술개발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중복확인서에 기술하여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산기술연구원장은 통보된 제1항의 연구과제가 중복과제인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확인대상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그 다음단계의 기술개발사업을 추

진코자 하는 경우나 상당부분이 유사한 기술개발사업을 상이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용자사업자 선정] ①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부문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용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용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중요성
2.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 취급기관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또는 연구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인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④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말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선정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용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중복과제를 신청한 자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 9 조 [계속사업 등의 지원]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과제의 사업기간

이 36개월 이상의 장기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일 경우 2회계년도 단위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2차분부터의 계속지원여부는 제15조 제2항에 의한 평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2개 이상의 용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용자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사업자 확정 및 통보】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사업자 확정요청이 접수되면 당해년도 자금운용의 방향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에 부문별 용자사업자를 확정하고 취급기관 및 용자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자사업자 및 취급은행의 장과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용자사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의 대출】 ①용자사업자는 사업자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장으로부터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자사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후 대출기한이 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으로부터 개발기간연장승인서를 받아 연장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대출기일은 용자금 지원결

정 당해 회계년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업의 변경】 ①용자사업자는 해당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개발기간의 연장
2. 지원금액의 변경
3. 기타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사업의 관리

제13조【사업자 확정 전 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제8조의 참여제한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제한확인서를 작성하여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생산기술연구원장은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생산기술연구원장은 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취급기관의 장이 통보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내용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참여가 제한된 사업자

제14조【사업의 관리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진도관리, 사업완료관리, 사업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진도관리는 확정된 용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자자금의 대출여부 및 개발사업의 진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완료관리는 용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사업성과분석은 완료과제의 사업화여부 및 개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계속과제의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용자사업자로부터 개발기간 1개월 전까지 당해사업 개발결과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속지원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의 책임】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자사업자가 확정될 경우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지원지침상의 공동개발사업, 계속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제재조치

제17조【시정명령】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취급기관의 장, 용자기관의 장, 취급은행의 장이 공업

발전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가 공업발전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대출자금의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출자금의 회수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가 면책될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된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자확정된 사업을 중단한 때
2.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 회수조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용자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 내용 등은 용자사업자와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용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개발사업의 완료 유무를 확인한 후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자금추천 심사위원회】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보고의무】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자사업자별 추천 및 대출현황(당해년도 9월말 기준으로 9월 15일까지)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현황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현황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보고서

②용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진도보고서(반기경과후 익월 말일까지)
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용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자금대출내역(매분기말 기준 분기종료후 10일 이내)
2. 연도별 자금대출현황(당해년도 9월말 기준으로 9월 15일까지)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취급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용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여약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자금대출내역(매분기말 기준 분기종료후 10일 이내)
3. 대출기한 연장승인현황(매분기말 기준 분기종료후 10일 이내)

제21조【수수료】 ①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에게 사업지원금액의 0.25% 이내에서 사후관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비용
4. 기타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수수료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세부지침】 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